

베트남 투자시 유의사항 5가지

최근 베트남의 가속화된 경제성장과 한-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FTA)까지 체결되면서, 한국기업의 베트남 내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이 1992년 정식수교를 맺은 이래 양국간 교역은 이미 76배 성장했고 투자는 451배 증가할 정도로 베트남은 이미 한국의 전략 시장으로 자리매김하였을 뿐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의 4위 교역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베트남은 값싼 노동력, 1억 이상의 인구로 지난 기간 동안은 주로 노동집약적인 사업에 집중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외국 투자가 증가하면서 산업구조가 기술집약적인 사업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사전에 법률자문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여 사업의 확대를 꾀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안타깝게도 베트남 법률에 대한 사전 지식의 부족으로 투자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를 빈번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사는 그간의 베트남 회사 설립 및 투자 자문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 투자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5가지를 선별하였습니다.

신&유법률사무소의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신&유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본 뉴스레터와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변호사 신진욱

T. 02.6323.6221
E. jwshin@shinyoo.co.kr

1. 베트남에서는 토지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베트남의 토지사용 형태는 국가소유 토지, 한시적 사용권 이양 토지, 사실상 개인소유 토지 크게 3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다만, 주택, 건물 등에 대해서는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며 외국인의 경우에도 최근 법령 개정 등으로 아파트, 단독 주택 등을 구입, 소유할 수 있으며, 보유기간은 소유권 증명 발급일로부터 50년간입니다.

국가소유 토지는 최장 50년 동안 임대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로 베트남 내 대부분의 토지에 해당하는 약 90%가 이에 해당합니다. 한시적 사용권 이양 토지는 주로 민간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주택건설 등 사업용 부지로 최장 50년까지 사용허가를 받아 허가기간 동안 사용이 가능한 토지로 베트남 내에 조성된 공단부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실상 개인소유 토지는 1975년 정부가 내국인을 대상으로 주거용으로 분배한 토지로 양도, 저당, 상속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토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외국투자법인에 대하여 허용되지 않는 형태입니다.

소유형태로 나누면, 건물소유권, 토지사용권, 토지이용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외국투자법인이 취득하게 되는 토지이용권은 재임대가 불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토지이용권이 취소, 회수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다만, 토지임대료 일괄지급제도를 의하여 전대할 권리를 가질 수도 있으나, 별도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토지는 물론 주식 등의 명의신탁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베트남에서 외국투자법인을 설립하는데 최소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베트남에서는 투자허가증을 취득해야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법에 따라 투자가 제한되거나 투자가 금지되는 분야가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과거 소매업 등(소매업은 외국투자자들에게 투자가 제한되는 분야입니다)의 분야에서 현지인의 명의를 차용하

여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현지인의 변심으로 인하여 사업 자체를 빼앗기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이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투자법인의 경우 투자가 제한되는 분야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투자제한업종은 베트남 정부에서 정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투자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및 금융, 문화, 정보, 언론 및 출판, 엔터테인먼트, 부동산, 교육, 훈련 개발 사업 등에 이에 해당하는데, 그러한 규제가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 허가기관의 판단에 따라 재량적으로 부과되는 부분이 있어서 개별적인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베트남 내에서 외국투자법인을 설립하는데 최소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기간 소요는 투자허가에 대한 심사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설립절차 비용을 아끼기 위하여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진행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투자제한업종의 경우 당국이 자본금의 증액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고, 투자허가에 대한 심사 역시 까다롭게 진행되어, 이보다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더 많은 비용들이 지출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각종 제조공장을 설립할 경우 베트남 내에서는 환경규제가 까다로운 편이므로, 해당 지역 내 환경규제들을 확인해야 하며, 폐수, 매연 등의 허가 등이 가능한지, 배출량 규제는 어느 정도인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반면, 에너지, 농림산품의 생산 및 가공, 첨단기술, SOC, 경제특구 내의 투자 등은 투자를 촉진하고 조세감면 혜택 등도 있으므로, 이를 그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투자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3.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Red Bill**을 챙겨야 한다.

베트남은 아직까지는 신용카드나 영수증 보다는 현금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다소 외국투자법인의 임직원들이 자주 놓치는 것은

현금으로 지급을 하면서, 부가세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적격증빙, Red Bill이라고 불리는 영수증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 질의가 오는 것들 중 골프 그린피에 관한 것이 많은데, 베트남에서는 적격 증빙이 구비되어야 할 뿐 아니라 반드시 사업관련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골프 그린피의 경우 사업관련성이 없는 비용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Red Bill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회사비용으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Foreign Contract Tax("FCT")라고 불리는 일종의 원천세 부과에 유의해야 합니다. 조세의 직접 납부를 위하여 VAS(베트남 회계제도)에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를 등록하는 경우 베트남 현지 세무서에서의 세무조사가 가능하므로 이러한 방법보다는 외국투자법인을 포함한 베트남 내 계약당사자에게 부과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베트남간 조세조약이 있어 이중과세가 방지되기는 하나, 조세조약에 따른 조세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면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노동법상 규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출발한 탓에 노동법상 규제가 다른 나라보다 엄격한 편입니다. 값싼 임금의 매력도 있지만, 초과 근로, 휴일 근로 등이 있는 경우 통상적인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잔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경우 이를 예상 인건비로 계상해야 합니다.

베트남 노동법은 정규직, 기간제 근로(12개월부터 36개월), 계절적 근로 크게 3가지 형태의 근로계약을 규정하고 있는데, 고용기간은 3개월 미만인 이상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베트남 사회복지부가 발행한 표준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정규 근로시간은 일일 8시간으로 제한되고, 근로시간은 협의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으나 초과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토요일 근무는 정상 근무에 해당하므로, 주당 근로시간은 48시간이며, 연간 초과 근무시간은 3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차는 12~16일이며, 여성 근로자의 경우 4~6개월의 유급 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12개월 미만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제도가 지역에 따라 다른데, 하노이, 호치민 등과 같은 도심 지역은 도시 외곽 지역인 하이퐁, 다낭, 동나이, 빈중, 붕따우 등에 비하여 최저임금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도심 지역은 숙련된 인력이나 고급 인력들이 많아 인력 수급이 원활한 반면, 도심지 또는 그 주변지역으로 벗어난 시골 지역에는 아직도 농사를 주업으로 삼고 있어 필요 인력의 수급에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지 선정에 있어서 제조업의 경우 경제특구로 지정된 공단 지역을, 무역 또는 서비스업 등과 같이 유관기관 및 동종업종과의 교류가 많은 경우 도심지역, 특히 호치민 1군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분쟁의 해결은 제3국 중재관할로 정하는 것이 좋다.

베트남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절차는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 권리의 실행 등에 관한 사항이 비교적 명확하지 않고, 사법부의 독립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외국 법원의 판결 집행이 쉽지 않습니다. 그에 비하여, 베트남에서 중재절차가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어 특히 상사 분쟁과 관련하여서는 법원을 통한 판결보다 더 낫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1958년 뉴욕협약(“뉴욕협약”)에 따라, 현재 베트남에서는 외국중재판정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패소한 당사자가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거나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또는 신청 당시 분쟁 대상이 되는 재산이 베트남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베트남 기업과의 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 제3국 또는 베트남 내 중재기관으로 분쟁관할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는 베트남 현지 로펌들과 협업을 통하여 국내외 기업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편리한 점은, 귀사는 귀사의 결정을 당사에 전달하시기만 하면 되고, 당사가 그 결정에 따라 현지 로펌들과 그 절차 등을 논의하여 처리하게 되므로, 의사소통, 현지 법률에 대한 부지 등의 어려움을 굳이 걱정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지사를 설치하여 많은 비용을 청구하는 대형 로펌들에 비하여 현지 변호사들과의 직접적인 소통과 협업으로 지사 운영 등에 따른 부대비용들을 줄일 수 있으므로, 청구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에도 다양한 현지 경험들을 바탕으로 베트남 내 기업 진출을 돕고 있으며, 귀사가 베트남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경우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SHIN & YOO
Legal Advisory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 56길 9, 우리기술빌딩 11층

T. 02.6323.6220
F. 02.6323.6223